



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

종합/사회

뉴스홈 > 사회

크게 작게 기사프린트 기사이메일

- 사회, 내셔널, 스테이트 / 로컬, 오피니언, 특약뉴스, 본국뉴스

취업비자

입력일자: 2010-03-18 (목)

취업비자의 종류는 다양하다. 종류마다 법적조건이 다르므로 가장 적합한 취업비자를 선택해야한다.



E-2 비자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운영할 사람이나 회사간부 또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들에게 주어진다.

H-1 비자는 전문직을 위한 비자이다. 전문직은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이다.

E-2, L-1, 그리고 H-1 비자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요구사항은 다르다.

E-2 비자인 경우 회사의 50% 이상을 미국과 조약을 맺은 외국인이 소유해야한다.

반면 L-1 비자는 투자자의 국적과는 무관하다. 그러나 외국에 있는 모회사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50% 이상 소유하거나 거꾸로 미국에 있는 모회사가 외국에 있는 자회사를 50% 이상 소유한 경우 L-1 비자가 가능하다.

E-2 비자와 L-1 비자와는 달리 H-1 비자는 회사의 소유자와 자회사나 모회사에 대한 특별조건이 없다.

작년에는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H-1 비자 신청자의 수가 대폭 감소하여 H-1 할당수가 늦게 소진되었다.

NEWS 한국일보 전자신문, 미주판, 스포츠, 경제, 한국일보 본국지, 한국일보 교육, 한국일보 건강/푸드/부동산/Weekend, 한국일보 부동산, 한국일보 안내광고

- 많이 본 기사: 건보개혁법안 역사적 통과, 다주택 보유자 차압 증가, 최경주 준우승, 오피스 '메뚜기족' 골치, 사실상 전국민 대상 보형해택, 한인타운서 자폐증 흑인 경찰총격에 숨, 부산항 미 7함대서 시민권 선서식, "이공분야 석·박사 학위자 취업불문, IKEN, 한국어 이중언어반 증설 박, 신중탕화 점안불사 및 개산 방생대법회

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한국어 지원어를 받으세요. 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



시계·보석전 스위스 개막..

에 이민국에서 추첨을 하여 당첨된 신청자들만 H-1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.

H-1 비자의 이런 단점 때문에 E-2 비자나 L-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. 그리고 E-2 비자는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대사관에서 직접신청이 가능하다.

미국회사 소유자의 국적, 외국에 있는 회사의 생존여부, 취업하기전의 대기시간 말고도 투자금액, 회사의 규모, 고용인의 수 또한 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.

E-2 비자의 경우 법은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요구한다. 그러나 상당한 액수의 투자는 정해져 있지 않다. 사업체마다 다르지만 대사관에서 E-2 비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\$30만 달러 정도의 투자가 좋다.

L-1 비자와 H-1 비자는 표면적으로는 투자금액과는 관련이 없다. 그러나 이민국에서 회사의 규모가 작아 외국인을 회사간부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비자는 거절될 수 있다. 회사간부로 L-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밑에 적어도 8명 정도의 고용인이 있는 것이 좋다.

H-1 비자 또한 L-1 비자처럼 투자금액과 무관하다.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L-1 비자처럼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H-1 비자는 거절될 수 있다. H-1 비자를 심사할 때 이민국에서 회사의 업종, 규모, 직원수, 외국인의 전문직, 임금 등을 고려하는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.

그리고 E-2 또는 L-1 회사간부나 특수기술자 또한 H-1 비자를 받을 수 있다. 그러나 회사간부와 특수기술자의 직위가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H-1 비자는 거절될 수 있다. 예를 들자면 요리사의 경우 보편적으로 학사학위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E-2 특수기술자로 비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H-1 비자는 받기 어렵다. 회사간부 또한 상황에 따라서 H-1 비자를 받은 것보다 E-2 비자나 L-1 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. H-1을 받으려면 회사간부의 직업이 학사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별도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다.

위와 같이 취업비자의 요구사항과 특성이 다르므로 비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한다.
(213)291-9980

이동찬 / 변호사

Law offices of Isaac Lee

홈으로

회사안내

게임월드

한인업소

구독신청

배달사고접수

Place an AD

독자의견

안내광고신청

광고안내

라디오서울 생방송

 **한국일보**
KOREATIMES.COM

THE KOREA TIMES

 **서울경제**

소년한국일보

 **hankooki.com**

미주 한국일보의 모든 콘텐츠(기사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바, 무단 전재·복사·배포 등을 금합니다.

COPYRIGHT © 1997-2006 **Koreatimes.com** ALL RIGHTS RESERVED. **CONTACT** FOR MORE INFORMATION